금오공과대학교 원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대학원생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연구의 상호 교류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대학원생의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일반, 산업, 교육, 컨설팅)
재학생(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으로 한다.
단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 대하여 문서로써 본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회장은 이를 수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 공정,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가진다.
원우회비는 대학원생 스스로 납부 여부를 결정한다.(자율)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제2장 기구

제6조 (기구)
본회는 총회, 운영위원회(임원진), 감사의 기구를 둔다.

제7조 (총회)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임원진)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1인, 산업대학원 원우회장 1인, 교육대학원 원우회장 1인, 컨설팅대학원 원우회장 1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 (감사)
감사는 운영위원들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회는 회칙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에서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기타 중요한

학생자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사업계획의 보고
나.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다. 회칙 개정안의 승인
라. 회장 불신임안 확정

제11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온/오프라인 기준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장의 선거)
회장은 대학원생 회원으로부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회장은 후보들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동표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선거의 운영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일시, 장소, 방식 등)

제13조 (정기총회)
회장은 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임시총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공동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일 전에 각 회원에 대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한다.
긴급 사안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의 의결권)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고,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총부부에서 보관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 (회의의 소집)
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함에는 회의를 정하여 2주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지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본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회비 확정

제20조 (성립 및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장 회장
제21조 (회장의 직위와 책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제22장 (회장 선거의 시기)
회장의 임기가 만료 될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대학원생 투표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투표 참여자의 과반 이상 득표시 당선으로 한다.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의 임기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회장은 선거를 통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규칙 제정권)
회장은 본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4조 (회장불신임안)
회원 1/3 이상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때 회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부회장 및 각 부장 또한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운영위원회)
회장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칙에 명시된 부회장 및 각 부장을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각 부장은 부원을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6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써 각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부는 서무, 문서, 회계 등 타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기획부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결산안 기획 및 선거를 관장한다.
학술부는 학술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홍보부는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각 부에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회장이 관장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재적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7장 재정

제2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월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회비책정)
본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회비는 매학기 시작 전 등록금 납부 시점에 고지하며 3만원으로 한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기획부에서 기획하며, 집행은 총무부에서 담당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32조 (재정관리규정)
본회의 재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3조 (감사)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말에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선거관리

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들 중에서 2인으로 구성한다.
단, 회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는 운영위원만으로 구성하여여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 (후보자 등록)
회칙에 규정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 2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1)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본회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